

##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스타트업 모집공고

육·해·공군 등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협업을 통해 국방 기술혁신을 가속화함에 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http://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참고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신기술 적용 수요가 있는 군(육·해·공군)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해 국방 기술 고도화 및 스타트업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붙임 2]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내외(’26. 4~11월 예정)

□ 선정규모 : 스타트업 1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및 사업화기술개발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군(육·해·공군)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PoC) 등에 소요되는 협업 지원금 지원 (최대 1억원)
- (사업화 연계) 우수 스타트업 대상 국방부 시범사업 및 전력 지원 체계 실증용 구매, 방사청 군 실증 지원사업 등과 연계
- (후속지원 연계\*)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최대 1.5년, 2억원)’ 및 ‘구매연계형 R&D(최대 2년, 6억원)’ 사업 연계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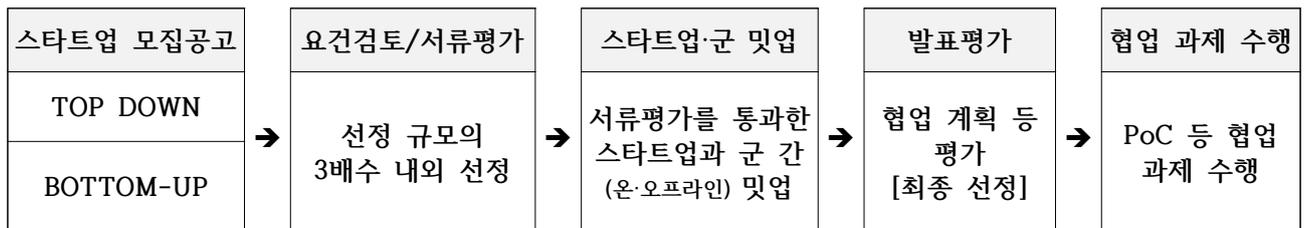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변동 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2. 모집 유형**

□ 모집개요 : 소요 군(육·해·공군 등)에서 제시한 전략과제를 해결하는 Top-Down 유형과 스타트업이 기술을 역제안하는 Bottom-Up 유형

- ① Top-Down : 군에서 전략적 협업을 필요한 세부 기술 및 과제를 제시하고, 해당 과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선발·매칭
- ② Bottom-up : 군에서 개선 필요한 업무 등 협업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제를 역제안

< 사업 운영 절차(안) >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유형 요약 >

① Top-Dow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에서 구체적 기술과제 제시</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협업 과제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동시다발적 드론 운용을 위한 주파수 활용 기술</td> </tr> <tr> <td>2</td> <td>극초소형 드론(길이 20cm 내외) 탐지 및 파괴(무력화)를 위한 대응 기술</td> </tr> <tr> <td>3</td> <td>능동소음제어(ANC) 기반 함정/어뢰 추진 소음 최소화 기술 개발</td> </tr> <tr> <td>4</td> <td>AI 기반 항공기 이상자세 자동 회복 시스템</td> </tr> <tr> <td>5</td> <td>소부대 감시정찰용 무동력 공중부유체(Spy Kite) 기술 개발</td> </tr> <tr> <td>6</td> <td>AI 기반 적 스마트 지뢰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개발</td> </tr> <tr> <td>7</td> <td>드론의 GPS 운용불가 시, 함상 자동 이·착함 가능체계 개발</td> </tr> <tr> <td>8</td> <td>AI 기반 유·무인기 공중충돌 예측·회피 시스템</td> </tr> <tr> <td>9</td> <td>상륙작전 기만을 위한 가변형 AI 디코이 군집체계 개발</td> </tr> </tbody> </table>	구분	협업 과제명	1	동시다발적 드론 운용을 위한 주파수 활용 기술	2	극초소형 드론(길이 20cm 내외) 탐지 및 파괴(무력화)를 위한 대응 기술	3	능동소음제어(ANC) 기반 함정/어뢰 추진 소음 최소화 기술 개발	4	AI 기반 항공기 이상자세 자동 회복 시스템	5	소부대 감시정찰용 무동력 공중부유체(Spy Kite) 기술 개발	6	AI 기반 적 스마트 지뢰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개발	7	드론의 GPS 운용불가 시, 함상 자동 이·착함 가능체계 개발	8	AI 기반 유·무인기 공중충돌 예측·회피 시스템	9	상륙작전 기만을 위한 가변형 AI 디코이 군집체계 개발
	구분	협업 과제명																			
	1	동시다발적 드론 운용을 위한 주파수 활용 기술																			
	2	극초소형 드론(길이 20cm 내외) 탐지 및 파괴(무력화)를 위한 대응 기술																			
	3	능동소음제어(ANC) 기반 함정/어뢰 추진 소음 최소화 기술 개발																			
	4	AI 기반 항공기 이상자세 자동 회복 시스템																			
	5	소부대 감시정찰용 무동력 공중부유체(Spy Kite) 기술 개발																			
	6	AI 기반 적 스마트 지뢰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개발																			
	7	드론의 GPS 운용불가 시, 함상 자동 이·착함 가능체계 개발																			
8	AI 기반 유·무인기 공중충돌 예측·회피 시스템																				
9	상륙작전 기만을 위한 가변형 AI 디코이 군집체계 개발																				
② Botto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에서 개선 필요한 업무 등 협업 분야 제시</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모 분야</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자율 제안 분야) 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방안</td> </tr> <tr> <td>2</td> <td>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td> </tr> <tr> <td>3</td> <td>항공엔진 창정비 분석체계</td> </tr> <tr> <td>4</td> <td>드론 스테이션 기반 24시간 자동 순찰</td> </tr> <tr> <td>5</td> <td>항공교통관리 자동화</td> </tr> </tbody> </table>	구분	공모 분야	1	(자율 제안 분야) 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방안	2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3	항공엔진 창정비 분석체계	4	드론 스테이션 기반 24시간 자동 순찰	5	항공교통관리 자동화								
	구분	공모 분야																			
	1	(자율 제안 분야) 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방안																			
	2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3	항공엔진 창정비 분석체계																			
4	드론 스테이션 기반 24시간 자동 순찰																				
5	항공교통관리 자동화																				

\* [붙임 1] Top-Down 협업 과제 및 Bottom-Up 공모 분야 참고

### 3.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10년 이내

-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2.26.~'26.2.26.)
-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6.2.26.~'26.2.26.)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3]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1. '20 ~ '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 '23 ~ '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
3. '25년 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4.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026. 2. 26.(목) ~ 3. 11.(수) 16:00까지 ※ 신청기한 엄수

#####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 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 Top-Down 유형 및 Bottom-Up 유형 중 **택1**

##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Top-Down / [별첨 2] Bottom-Up)
  -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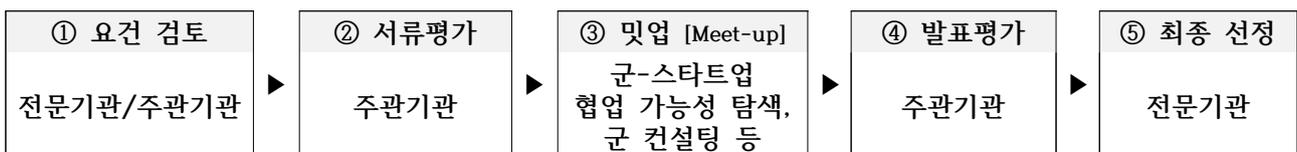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스타트업 선정평가 절차(안) >



※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
  - \*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밋업(Meet-Up)** : 발표평가 대상 스타트업과 군(육·해·공군) 간 온·오프 라인 1:1 밋업을 통한 협업과제 추진계획 보완 및 구체화
- **발표평가** : 과제 이해도, 신청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협업 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층 평가
    -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내 준수 + 질의응답)
    -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최종 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 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은 요청일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팹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프로그램, 이노웨이브(Inno-Wave)」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 단,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팹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프로그램, 이노웨이브(Inno-Wave)」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 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 평가지표

○ 협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기업의 역량·전문성, 실현 가능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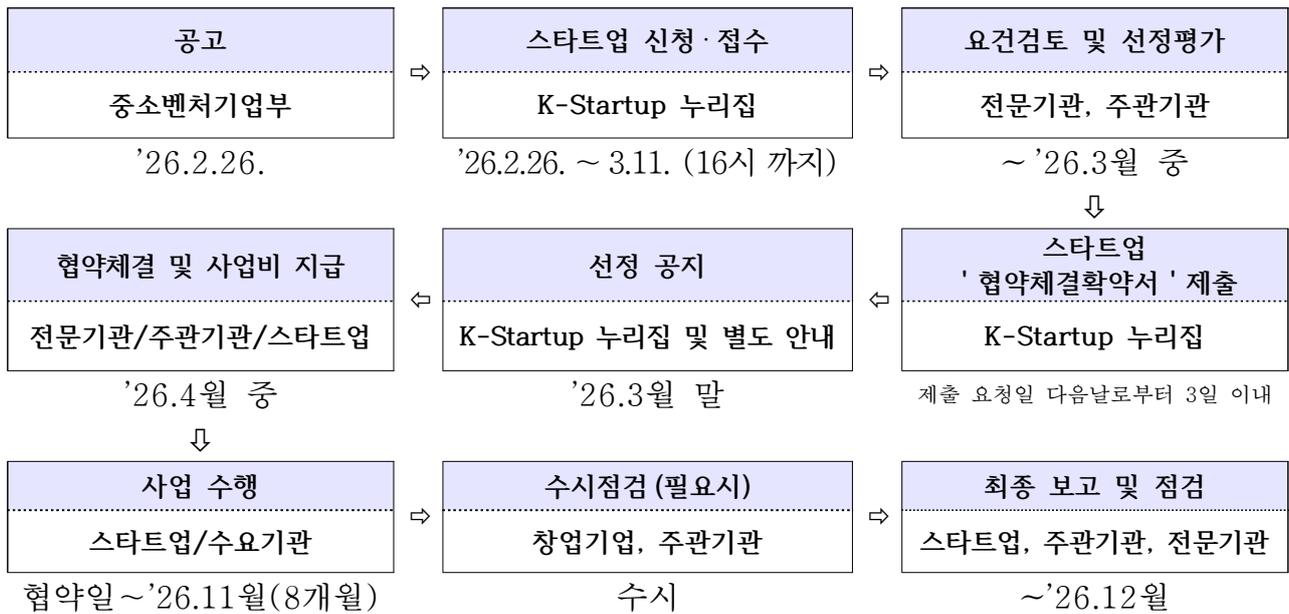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 항목	세부 내용
협업 과제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기관(군)이 제시한 과제의 요구 기술에 대한 스타트업의 협업 과제 이해도 정도</li> <li>* 발표평가 시, 수요기관(군) 담당자 평가위원으로 참석</li> </ul>
팀(기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업의 보유기술·인력 등의 전문성, 관련 프로젝트(연구) 수행 경험 등</li> </ul>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업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및 기술·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등</li> </ul>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활용 가능성 및 협업 과제 수행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수익성 검증 등</li> </ul>

##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유의 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스타트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함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팸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이노웨이브(Inno-Wave))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팸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이노웨이브(Inno-Wave))에 이미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연도와 관계없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민간 선별추천형(Bottom-Up), 상호 자율탐색형(On-Demand),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와 중복수혜 불가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사·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타 부처 및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을 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처리
- 수요기관(군)이 데이터 제공 시, 과제 해결 목적 외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군)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이 제시한 해결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관(군)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관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신청기업의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재 조치될 수 있음(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외)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7. 기타 사항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 Tel ) 053-759-8137
		( Tel ) 053-359-3620

연번	소관	과제 및 공모 분야
1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다발적 드론 운용을 위한 주파수 활용 기술</li> <li>- 재밍 환경하에 소부대 단위 드론 작전의 지속성 보장을 지능형 전파 상황 인지 기반의 자율 주파수 운용 및 다중 드론 통신망 구축 기술 확보</li> </ul>
2	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초소형 드론(길이 2Cm 내외) 탐지 및 파괴(무력화)를 위한 대응 기술</li> <li>- 현실화된 극초소형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필요</li> </ul>
3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소음제어(ANC) 기반 함정/어뢰 추진 소음 최소화 기술 개발</li> <li>- 추진축·선체 구조 진동 능동 제어 기술</li> <li>- 추진기 캐비테이션 대응 능동 소음제어(ANC) 기술</li> <li>- 어뢰 적용 소형화 ANC 모듈 개발</li> </ul>
4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반 항공기 이상자세 자동 회복 시스템</li> <li>- 조종사의 조작 오류, 공간정위상실 (Spatial Disorientation), G-LOC, 센서 이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자세·급강하·실속(실속 회복 실패 포함) 상황에서 항공기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으로 안정 자세로 복귀하는 체계</li> </ul>
5	해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부대 감시정찰용 무동력 공중부유체(Spy Kite) 기술 개발</li> <li>- 대대급 이하 부대의 작전 간 실시간 전장 정보를 획득하고 기상 환경,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개념의 정찰자산 확보</li> </ul>
6	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반 적군 스마트 지뢰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개발</li> <li>- 음향, 진동, 자기장 센서 등을 활용하여 적군 스마트 지뢰를 탐지하는 기술</li> <li>-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의 종류·중요도 등을 판단하는 적군의 스마트 지뢰를 속이는 기만 기술</li> <li>- 아군의 고가치 장비의 취약부를 관통하는 적군의 스마트 지뢰를 원거리에서 기폭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li> </ul>
7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의 GPS 운용불가 시, 함상 자동 이·착함 가능체계 개발</li> <li>- 드론의 관성항법 체계 및 지자기 정보 활용 함정 자동복귀 알고리즘 개발</li> <li>- 함정 및 지형정보를 이미지화, 기계학습 가능한 AI 모델 개발</li> <li>- 함정 자동복귀 알고리즘 및 AI 모델을 복합적으로 운용하여 GPS 운용불가 시, 함정 자동복귀 및 자동 이·착함 가능한 SW 개발</li> </ul>
8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반 유·무인기 공중충돌 예측·회피 시스템</li> <li>- 미래 전장에 무인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 유·무인기가 복합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AI가 충돌 위험을 실시간 예측하고, 필요시 회피 경고, 기동 명령을 통해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li> <li>- 다중센서 융합과 궤적 예측 인공지능, 강화학습 기반 회피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유무인 복합편대 및 군집무인기 운용의 안전성을 향상</li> </ul>
9	해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륙작전 기만을 위한 가변형 AI 디코이 군집체계 개발</li> <li>- 상륙작전 시 해안 교두보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군 상륙 세력의 손실 최소화를 통한 생존성 필요</li> <li>- 적의 정찰 및 정밀 타격 수단을 혼란시키기 위한 저비용·고효율 기만 자산 개발 필요</li> <li>- 기존 개발된 형태의 디코이는 운용 편의성과 기동성 측면에서 현대전 적용 한계 식별</li> </ul>

연번	소관	과제 및 공모 분야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제안 분야) 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방안</li> </ul>
2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류탐지레이더, AI 기반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탐지·인지·추적 정보 등 토대로 비행장별 조류 충돌 예방 통합체계 구축 필요</li> </ul> </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추론형 AI 기반 항공 엔진 창정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엔진 창정비 상태 검사 수행 시 제작사가 제시한 부품 수명 관리 한계에 근접한 부품에서 결함이 지속 식별됨에 따라 선제적 결함 관리를 위한 항공 엔진 창정비 분석체계 도입 필요</li> </ul> </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 스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조기 경보 및 신속대응체계와 드론 스테이션 기반 24시간 자동 순찰 도입 추진</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교통관리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교통량이 급증하는 현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력 중심의 관제체계를 데이터 및 AI 기반의 자동화된 항공 교통 관리체계로 전환 추진</li> </ul> </li> </ul>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별표 1]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드론·개인이동수단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선박
5G+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블록체인	전기 수소차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바이오	스마트홈
실감형 콘텐츠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우주	양자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차세대 원전	사이버 보안

붙임 3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http://rechallenge.or.kr)
-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1.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붙임 4****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붙임 5**

**2026년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 지원 내용**

※ '26년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AI 스타트업 선정기업 대상 지원  
내용이나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국징법 §13 ①)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국징령 §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국징법 §105 ①)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 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기존 2月\*→1月)

\*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처리